

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

제정 2000. 6. 19 조례 제269호
개정 2004. 2. 27 조례 제502호
2005. 10. 5 조례 제610호
2005. 12. 31 조례 제784호
2008. 10. 8 조례 제957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8. 10. 8>

제2조(감사청구 주민 수)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인 이상 이어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5. 12. 31, 2008. 10. 8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2. 2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10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2. 31 조례 제78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0. 8 조례 제957호, 법무행정 처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3조의4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6조”로 한다.

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

제2조 중 “법 제13조의4”를 “법 제16조”로 한다.

② 부터 ⑫ 까지 생략